

4. 공고방법 : 관악구 구보, 관악구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02-879-6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 제2018-936호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2017.10.10.)로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2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 등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879-6382, fax 879-7832 또는 우편발송)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18년 7월 19일 ~ 2018년 8월 2일(공고일 다음일 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조합 사무실

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조합 장 장영우(관악구 호암로 529, 3층)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4)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아파트 20개동, 1,487세대(임대 225, 일반 1,262세대)

- 평균19.7층/최고28층, 건폐율/용적률 22.97%/248.09% (이하 생략 : 관계도서 참조)

5)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계획에 관한 사항 등

라. 관계도서 : 생략(관계서류 일체를 공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방법 : 공람의견서(붙임)을 작성 후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방문, 우편발송(서울 관악구 관악로145, 1동6층 도시계획과) 또는 fax(879-7832) 제출 끝.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 제2018-938호 방치차량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소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주민불편, 교통장애, 안전사고위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따로붙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폐차, 회수)명령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 압류권자, 저당권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